

평택 포승(BIX)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변경)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평택 포승(BIX)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7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1. 산업단지 개요 (변경있음)

가. 단지개요(변경있음)

- 단 지 명 : 평택 포승(BIX) 일반산업단지
- 관리기관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 사업시행자 :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 산업단지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일원

나. 조성목적(변경없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BIX지구 개발계획변경(일반산업단지 지정, '18.11.21.) 반영
- 평택 포승(BIX)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반영한 적합업종 유치를 통해 산업경쟁력 확보
- 지역거버넌스 구축으로 지역고용촉진, 지역소득증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주도하는 경기도의 가치와 비전 부각

다. 사업추진경위 (변경있음)

- '08.05.06 :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1호)
- '11.12.08 : “황해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방안”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55호)
- '12.08.13 :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96호)
- '13.09.03 : 황해경제자유구역(포승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00호)
- '14.07.02 : 황해경제자유구역(포승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14호)

- '14.08.06 : 황해경제자유구역(포승지구) 실시계획 변경 고시(황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 2014-081호)
- '14.11.13 : 황해경제자유구역(포승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황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4-145호)
- '17.01.20 : 황해경제자유구역(평택BIX)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황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7-1호)
- '17.04.28 : 황해경제자유구역(평택BIX) 실시계획 변경 고시(황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7-2호)
- '18.01.16 : 황해경제자유구역(평택BIX) 실시계획 변경 고시(황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8-16호)
- '18.11.21 : 황해경제자유구역(평택BIX)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10호)
- '19.02.27 : 황해경제자유구역(평택BIX) 실시계획 변경 고시(황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9-1호)
- '19.03.07 :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BIX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
- '19.03.26 : 황해경제자유구역(평택BIX)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44호)
- '19.07.08 :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황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9-3호)
- '19.08.28 :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황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9-179호)
- '20.02.05 :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지구 개발계획(11차) 및 실시계획(4차) 변경 승인, 지형도면 고시(황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0-1호)
- '20.07.15 :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지구 개발계획(12차)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08호)

라. 분양현황 (변경있음)

(기정)

(단위 : m²)

구 분	총 면 적	분 양 가 능 면 적				조성 기간	사업 시행자
		소계	분 양	미분양			
				조성	미조성		
계	1,040,018.4	1,040,018.4	16,582.0	-	1,023,436.4	2008년 ~ 2020년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산업시설	778,663.0	778,663.0	16,582.0	-	762,081.0		
지원시설	-	-	-	-	-		
공공시설	177,590.4	177,590.4	-	-	177,590.4		
녹지시설	83,765.0	83,765.0	-	-	83,765.0		

※ 녹지시설 : 공원, 녹지

(변경)

(단위 : m²)

구 분	총 면 적	분 양 가 능 면 적				조성 기간	사업 시행자
		소계	분 양	미분양			
				조성	미조성		
계	1,040,019.4	1,040,019.4	28,490.0	-	1,011,529.4	2008년 ~ 2020년	경기주택 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산업시설	782,395.0	782,395.0	28,490.0	-	753,905.0		
지원시설	-	-	-	-	-		
공공시설	174,105.4	174,105.4	-	-	174,105.4		
녹지시설	83,519.0	83,519.0	-	-	83,519.0		

※ 녹지시설 : 공원, 녹지

마. 입주현황(변경있음)

(기정)

구분	입 주 업 체 수			면 적(㎡)		
	계	제조업	기타	계	제조업	기타
2019.07월 현재	1	1	-	3,818.11	3,818.11	-
향후	102	102	-	774,844.89	774,844.89	-

(변경)

구분	입 주 업 체 수			면 적(㎡)		
	계	제조업	기타	계	제조업	기타
2020.07월 현재	1	1	-	3,818.0	3,818.0	-
향후	101	101	-	778,577.0	774,845.0	3,732.0

바. 입주여건(변경있음)

(기정)

시 설 명	총 계 획	사 업 기 간	시 행 기 관
도 로(㎡)	166,169.4㎡	2008년~2020년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조성후 관리청 귀속
용 수(㎡/일)	생활: 2,928㎡/일 공업: 5,880㎡/일	"	-
전 력(Mwh/년)	105,927Mwh/년	"	한전 변전소 공급
통 신(회선)	18,885	"	KT통신(여유율 : 20%)
열 및 에너지	1,131,555Gcal/년	"	(주)삼천리에서 도시가스 공급
오·폐수처리장(㎡/일)	5,625㎡/일	"	포승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 처리
폐기물처리시설	-	"	· 62.82ton/일로 설치대상 아님 · 생활폐기물 : 평택시 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 배출시설폐기물 : 위탁처리

(변경)

시 설 명	총 계 획	사 업 기 간	시 행 기 관
도 로(㎡)	166,435.4㎡	2008년~2020년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조성 후 관리청 귀속
용 수(㎡/일)	생활: 2,946㎡/일 공업: 5,092㎡/일	"	-
전력(최대부하, kW)	103,019kW	"	한전 변전소 공급
통 신(회선)	18,794	"	KT통신(여유율 : 20%)
열 및 에너지	932,156Gcal/년	"	(주)삼천리에서 도시가스 공급
오·폐수처리장(㎡/일)	5,207㎡/일	"	포승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 처리
폐기물처리시설	-	-	· 11,815톤/년으로 설치대상아님. · 생활폐기물 : 평택시 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 배출시설폐기물 : 위탁처리

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가. 관리기본방향 (변경없음)

1) 목 표

- 체계적 산업구조 고도화로 업체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합리적인 업종배치를 통한 산업단지 운영의 효율성 제고

2) 추진방향

- 입주기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산업단지 활성화 도모
- 생산공간, 생산지원공간, 공공시설공간, 녹지공간으로 구역별 관리하여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나. 산업단지 용도별 구분계획 (변경있음)

(기 정)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m²)

총 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시설구역
1,040,018.4 (100.0%)	778,663.0 (74.9%)	-	177,590.4 (17.1%)	83,765.0 (8.1%)

※ 용도구역별 관리현황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합 계	1,040,018.4	100.0	
산업시설구역	778,663.0	74.9	
산업용지	778,663.0	74.9	
지원시설구역	-	-	
지원시설	-	-	
공공시설구역	177,590.4	17.1	
공공청사	6,008	0.6	
주차장	1,632.0	0.2	
변전소 등	3,754.0	0.4	
도로	166,196.4	16.0	
녹지시설구역	83,765.0	8.1	
공 원	34,999.0	3.4	
녹 지	48,766.0	4.7	

나. 산업단지 용도별 구분계획

(변 경)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m²)

총 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시설구역
1,040,019.4 (100.0%)	782,395.0 (75.3%)	-	174,105.4 (16.7%)	83,519.0 (8.0%)

※ 용도구역별 관리현황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합 계	1,040,019.4	100.0	
산업시설구역	782,395.0	75.1	
산업용지	778,663.0	74.9	
변전소	3,732.0	0.2	
지원시설구역	-	-	
지원시설	-	-	
공공시설구역	174,105.4	16.8	
공공청사	6,008.0	0.6	
주차장	1,632.0	0.2	
도로	166,435.4	16.0	
가스정압기	30.0	-	
녹지시설구역	83,519.0	8.1	
공 원	35,025.0	3.4	
녹 지	48,494.0	4.7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변경있음)

가) 산업시설구역 (기 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한다.)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로서 건축법 및 건축물 등의 설비기준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규정사항을 반영한 건축물

도면번호	허용용도	불허용도	건폐율	용적률	비고
산업시설 용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용도 중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부수용도에 한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전자,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 (C26), 기타기계 및 장비(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산업(C30)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70%	250%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따른 1,2종 사업장중 유효연돌고 50m 이상의 연돌을 설치할 경우에는 입주계약 체결전 한강유역환경청 협의 필요

가) 산업시설구역 (변 경)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한다.)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로서 건축법 및 건축물 등의 설비기준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규정사항을 반영한 건축물

도면번호	허용용도	불허용도	건폐율	용적률	비고
산업시설 용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용도 중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부수용도에 한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전자,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 (C26),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기계 및 장비(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산업(C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70%	250%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따른 1,2종 사업장중 유효연돌고 50m 이상의 연돌을 설치할 경우에는 입주계약 체결전 한강유역환경청 협의 필요

- 나) 공공시설구역 :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다) 녹지시설구역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 구획 평면도 : 「붙임1」

다. 업종별 배치계획 (변경있음)

1) 배치기준

(기 정)

- 가) 평택BIX는 자동차, 전자, 화학, 기계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함
 나) 화학산업용지는 주거시설용지와 최대한 이격하여 집적배치하여 유해물질로 부터의 안전성 확보 및 화학산업간 연계강화
 다) 지구중심부에 자동차 산업용지를 집적배치하여 지구중심 산업인 자동차산업의 상징성강조 및 자동차산업간 연계강화
 라) 기계장비산업용지를 자동차산업용지와 인접배치하여 연계산업간 시너지효과 창출
 마) 지구계변에 전자부품업종을 배치하여 지구외 인근지역으로 산업활동에 따른 소음, 진동 등의 위해요소 확산 최소화

(변 경)

- 가) 평택 포승(BIX)지구는 자동차, 전기, 전자, 화학, 기계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함
 나) 화학산업용지는 주거시설용지와 최대한 이격하여 집적배치하여 유해물질로 부터의 안전성 확보 및 화학산업간 연계강화
 다) 지구중심부에 자동차산업용지를 집적배치하고, 축전지(배터리) 연관산업 제조업체 유치에 위한 전기장비산업용지를 자동차산업용지와 인접배치하여 연계산업간 시너지효과 창출
 라) 지구계변에 전자부품업종을 배치하여 지구외 인근지역으로 산업활동에 따른 소음, 진동 등의 위해요소 확산 최소화

2) 세부 배치계획

(기 정)

업 종 별		구 분	배 치 계 획		향 후 계 획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합 계			103	778,663.0	103	778,663.0
산업 시설 용도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8	269,456.0	28	269,456.0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5	157,810.0	25	157,810.0
	C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22	99,193.0	22	99,193.0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8	252,204.0	28	252,204.0

※ 상기 업체수, 면적 등의 사항은 입주수요 및 향후 분양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변 경)

업 종 별		구 분	배 치 계 획		향 후 계 획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합 계			102	778,663.0	102	778,663.0
산업 시설 용도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1	206,162.0	21	206,162.0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9	102,872.0	19	102,872.0
	C28 전기장비 제조업		6	54,938.0	6	54,938.0
	C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22	99,193.0	22	99,193.0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7	252,204.0	27	252,204.0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7	63,294.0	7	63,294.0

※ 상기 업체수, 면적 등의 사항은 입주수요 및 향후 분양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업종별 배치계획도 : 「붙임2」

라. 입주관리계획 (변경있음)

1) 입주 대상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아래의 제조업

(기 정)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업 종 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중 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 관리기관이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과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에서 허용되는 건축 가능한 업종 및 산집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중 전력생산성을 위해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에 한함

(변 경)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업 종 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중 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 관리기관이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과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에서 허용되는 건축 가능한 업종 및 산집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중 전력생산성을 위해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에 한함

※ 부동산 임대업

1)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업종

- 부동산 임대업은 최초 분양에서 제외되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후 또는 사업개시 신고후에만 가능하며, 평택포승(BIX)일반산업단지내 입주업종을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됨.

2) 입주제한

(기 정)

구 분	입주제한 사항
입주업종 중 유해물질 배출가능 업종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를 제한함. 1.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업장은 제외)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3. 사업공정 중 염색, 주물, 도금, 염, 안료, 피혁 등이 있는 경우 4. 용수다소비 사업장(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제1,2종에 한함) 5. 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라.2)입주제한」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에서 불허하는 업종

【입주제한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입주제한업종(세세분류)	비 고
C20(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20112 천연수지 및 나무 화학물질 제조업 20119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20129 기타 기초무기화합물질 제조업 20131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 20132 염료, 조제 무기 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0201 합성고무 제조업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203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20311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20312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 비료 제조업 20321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20322 생물 살균·살충제 및 식물 보호제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 단, 입주제한업종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첨단업종 (C20 “화학물질 및 화학 제품 제조업”만 해당)중 특정대기유해물질, 지정악취물질,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이 발생하지 않는 업체는 허용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첨단업종(C20“화학물질 및 화학 제품 제조업”만 해당) - 「붙임3」

(변 경)

구 분	입주제한 사항
입주업종 중 유해물질 배출가능 업종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를 제한함. 1.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업장은 제외)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3. 사업공정 중 염색, 주물, 도금, 염, 안료, 피혁 등이 있는 경우 4. 용수다소비 사업장(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제1,2종에 한함) 5. 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라.2)입주제한」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에서 불허하는 업종

【입주제한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입주제한업종(세세분류)	비 고
C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20112 천연수지 및 나무 화학물질 제조업 20119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20129 기타 기초무기화합물질 제조업 20131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 20132 염료, 조제 무기 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0201 합성고무 제조업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203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20311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20312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 비료 제조업 20321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20322 생물 살균·살충제 및 식물 보호제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 ※ 단, 입주제한업종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첨단업종 (C20 “화학물질 및 화학 제품 제조업”만 해당)중 특정대기유해물질, 지정악취물질,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VOC)이 발생하지 않는 업체는 허용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첨단업종(C20“화학물질 및 화학 제품 제조업”만 해당) - 「붙임3」

3) 입주자격 (변경없음)

가) 산업시설구역

- (1) 「산업집적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격을 갖춘 자
- (2) 「산업집적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3) 「산업집적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중 전력생산성을 위해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에 한함

(4) 입주 대상업종에 적합한 공장

(5)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고시前 사업시행자와 용지공급계약을 체결한 공장

(6)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최초 분양에서 제외되고,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후 또는 사업개시 신고후에만 가능하며, 평택 포승(BIX)일반산업단지 내 입주업종을 유치하는 경우에 해당됨.

나) 주차장

○ 「주차장법」및 평택시 관련 조례에 따라 주차장 사업을 영위코자 하는 실수요자

4) 산업시설용지 입주 우선순위 (변경없음)

가) 산업시설구역

- (1) 지역주민 우선고용, 상시 고용인원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기업
- (2) 품질경영 및 기술우수기업, 수출 등 유망중소기업, 재무구조 건실기업으로 자체 자금을 조달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
- (3) 수도권 및 타지역으로부터 공장 및 본사 이전(확장) 업체
- (4) 평택시 관내에서 이전 또는 확장하고자 하는 기업
- (5) 기타 입주 자격을 갖추고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

※ 입주우선순위는 입주순위에 따라 입주시키되 동일순위 경합 시에는 추첨하여 선정

5) 입주절차 (변경없음)

○ 「산업집적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체결

마. 사후관리계획 (변경없음)

1) 분양용지 관리

○ 「산업집적법」및 산업단지관리지침,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관리

2) 환경관리

가) 입주기업체는 환경관련법률 및 지자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

나)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비는 오염물질 부하량을 기준으로 하여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함

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체는 근로자 및 주변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단지 내에 휴식, 운동공간 등 충분한 녹지 공간 확보

3) 안전관리

- 가) 관리기관은 풍수해 등 재해를 위해 관계기관 등과 재해복구 협조 체제 구축
- 나) 산업집적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의거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하고 재해발생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복구 실시
- 다) 입주기업체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는 관계 법령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라) 입주기업체는 사업운영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함

4) 기반시설지원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급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바. 지원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변경있음)

(기정)

1) 지원(공공)시설 설치계획

가) 용수공급계획

- (1) 생활용수는 도곡 배수지(신설), 공업용수는 지구내 공업배수지(신설)에서 분기하여 공급
- (2) 용수량 : 8,808m³/일(공업용수량 : 5,880m³/일, 생활용수량 : 2,928m³/일)

나) 오·폐수처리계획

- (1) 산업단지내 발생하는 오수는 지구내 오수중계펌프장을 설치하여 포승공공 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하여 처리
- (2) 오·폐수량 : 5,625m³/일

다) 에너지 공급계획

- (1) (주)삼천리에서 단지내 배관망을 구성하여 도시가스 공급
- (2) 열수요량 : 1,131,555Gcal/년

라) 전력 공급계획

- (1) 한전 만호변전소에서 공급받아 각 수용기에 적합한 전압으로 강압 공급
- (2) 전력부하량 : 105,927Mwh/년

(변경)

1) 지원(공공)시설 설치계획

가) 용수공급계획

- (1) 생활용수는 도곡 배수지(신설), 공업용수는 지구내 공업배수지(신설)에서 분기하여 공급
- (2) 용수량 : 8,038m³/일(공업용수량 : 5,092m³/일, 생활용수량 : 2,946m³/일)

나) 오·폐수처리계획

- (1) 산업단지내 발생하는 오수는 지구내 오수중계펌프장을 설치하여 포승공공 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하여 처리
- (2) 오·폐수량 : 5,207m³/일

다) 에너지 공급계획

- (1) (주)삼천리에서 단지내 배관망을 구성하여 도시가스 공급
- (2) 열수요량 : 932,156Gcal/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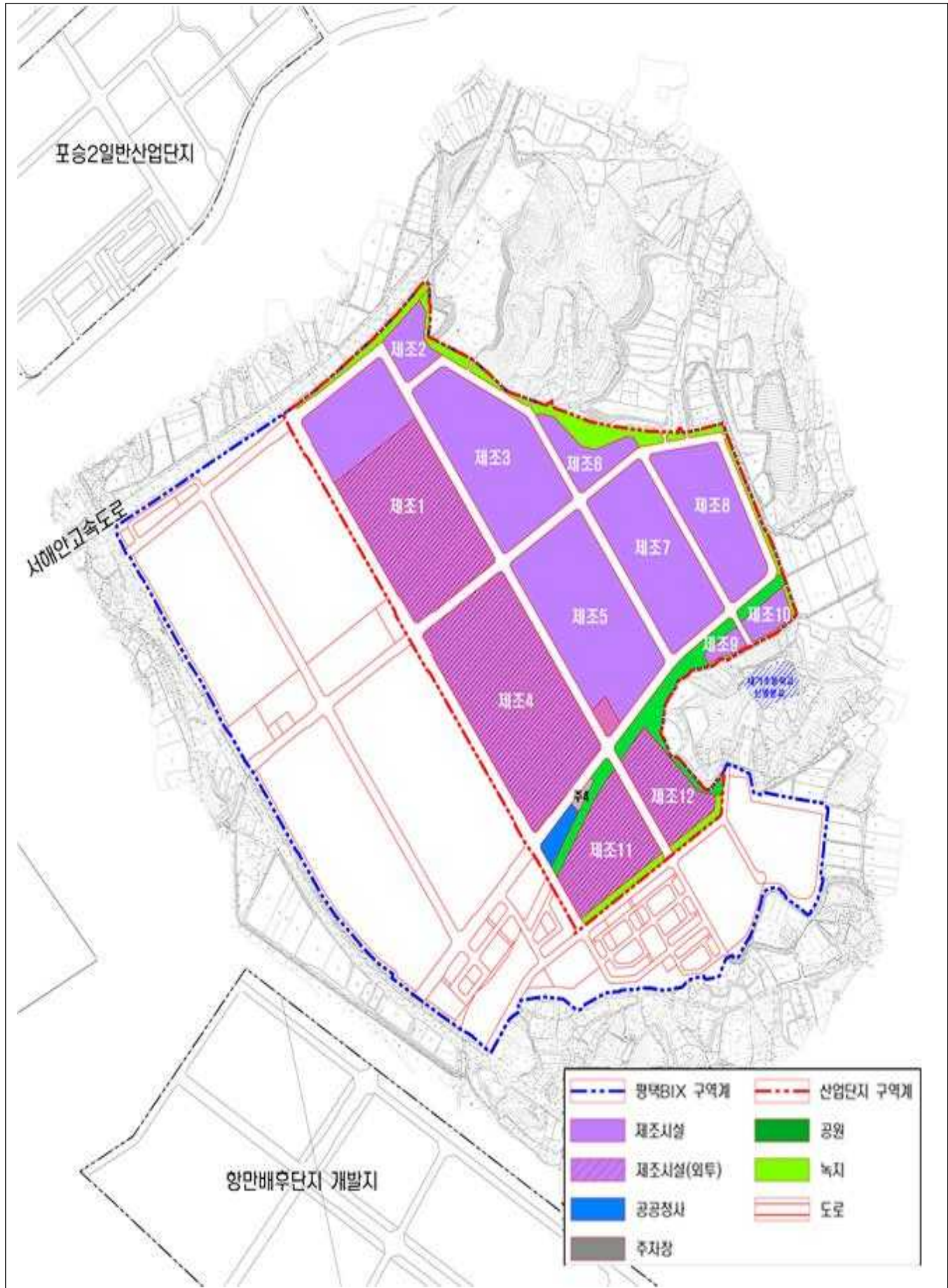
라) 전력 공급계획

- (1) 한전 만호변전소에서 공급받아 각 수용기에 적합한 전압으로 강압 공급
- (2) 전력부하량 : 103,019k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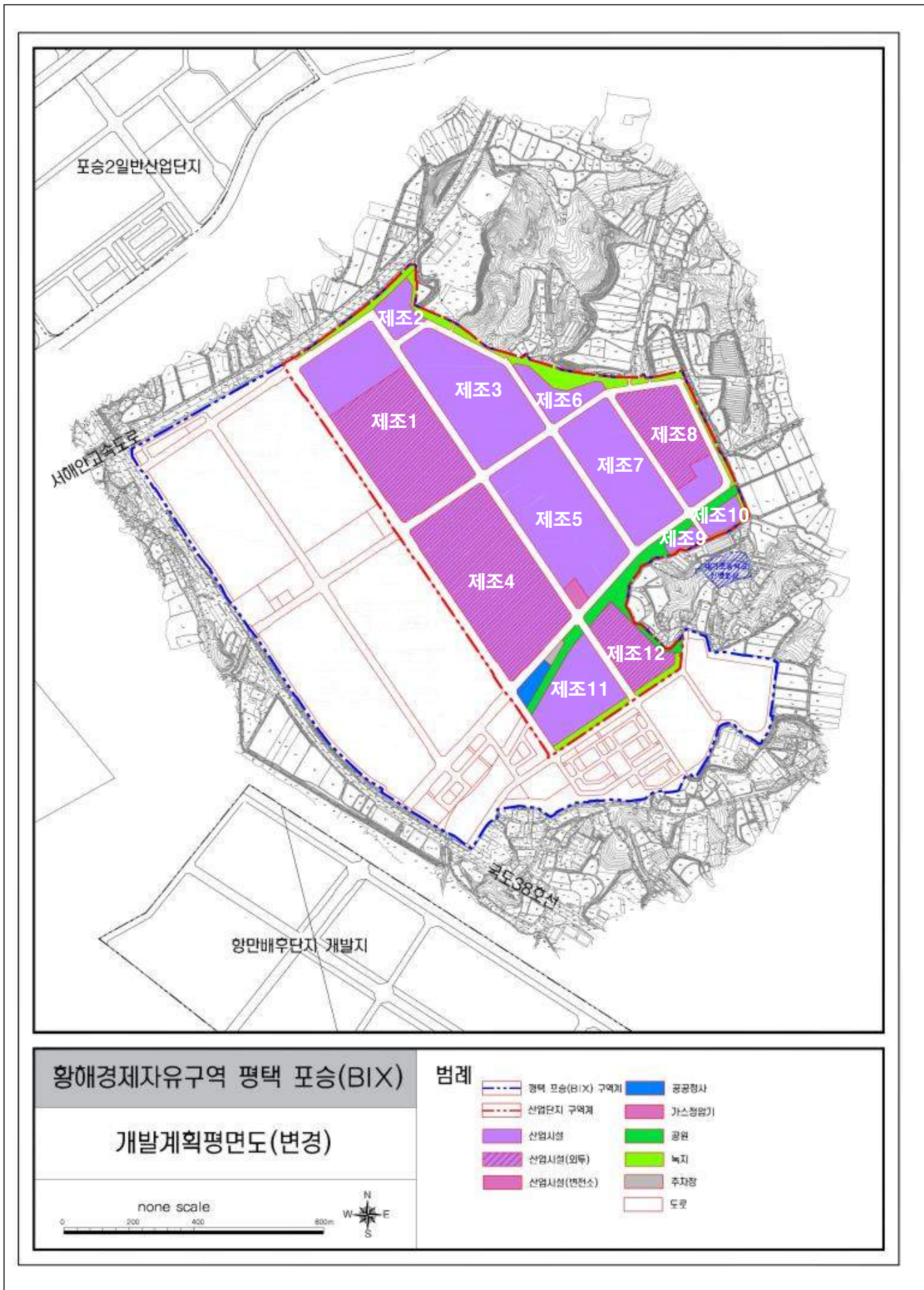
사. 기타 산업단지 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1)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시행규칙」 및 「산업단지 관리 지침」에 따라 관리함
- 2)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로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운영 및 지정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운영 및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경제자유구역의 운영 및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경제자유구역 개발 지침」, 평택 포승(BIX)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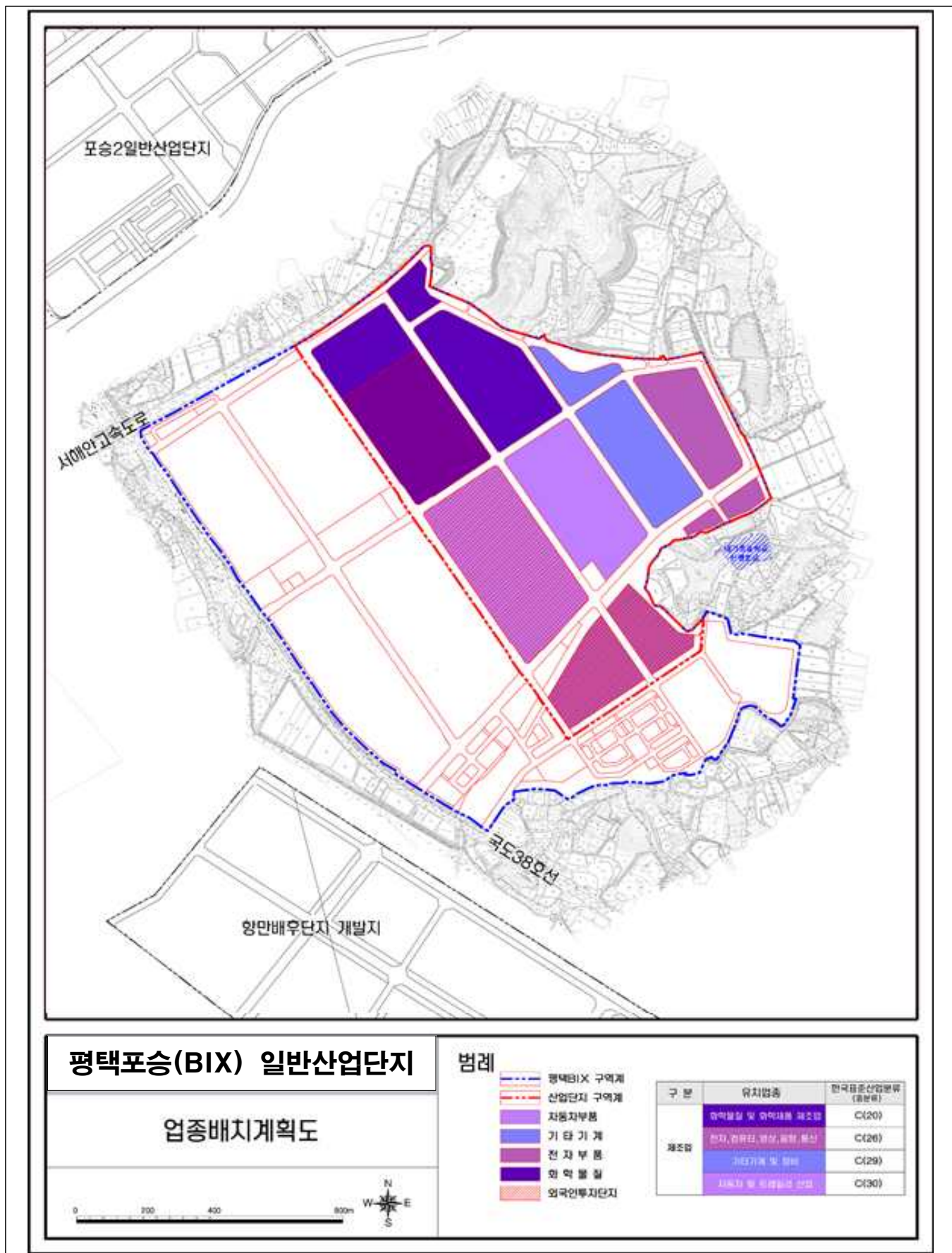
< 붙임 1 - 용도별 구획평면도 > -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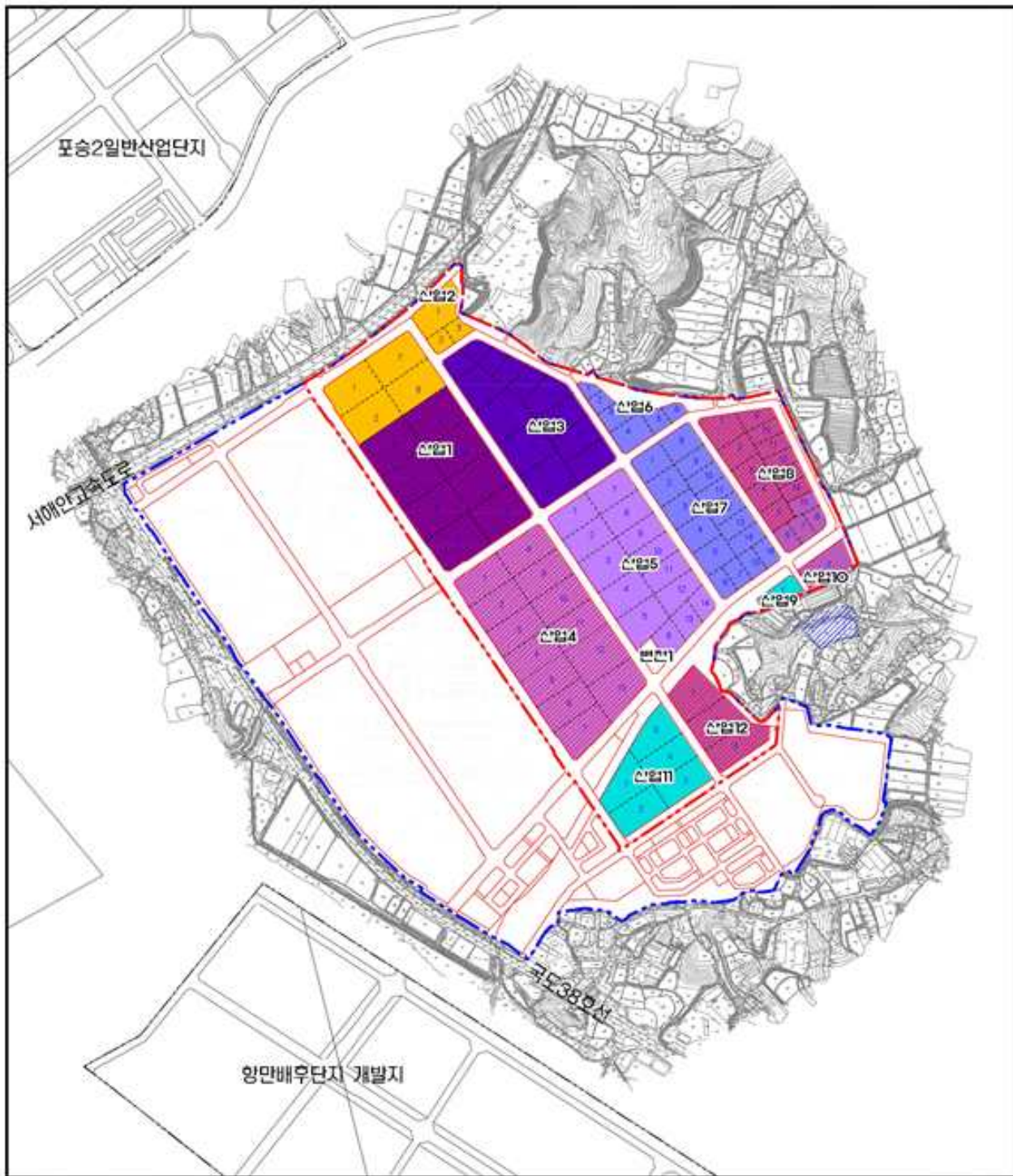
< 붙임 1 - 용도별 구획평면도 > - 변경



< 붙임 2 - 업종별 배치계획도 > - 지정



< 붙임 2 - 업종별 배치계획도 > - 변경



평택포승(BIX) 일반산업단지

업종배치계획도(변경)

none scale



범례

- 주택 모음(BIX) 구역제
- 산업단지 구역제
- 자활자부품
- 기 타 기 계
- 전 자 부 품
- 화 역 물 질
- 기타문송정비
- 전 기
- 외국인투자단지

구 분	유치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2015년판)
제조업	유치발달 및 유치재활 제조업	C(20)
	전차, 중형차, 버스, 트럭, 농기계	C(28)
	자동차용 및 부품	C(29)
	자동차 및 부품제조업	C(30)
	자동차용 부품업	C(28)
	자동차용 부품 제조업	C(31)

<붙임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15조 관련 별표5)>- 변경없음

분류 번호	업종명	적용 범위
20421	계면활성제 제조업	○ 계면활성제 중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고분자형 계면활성제 - 양이온 계면활성제 - 친환경 계면활성제(바이오유래, 유용미생물활용, 인체친화적, 생분해성)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 전기·전자용 기능성 접착제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전도성 접착제 - 광섬유용 접착제 - 반도체·디스플레이용 접착제 - 고내열 금속용 접착제 ○ 의료용 접착제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연조직(피부 등)용 접착제 - 경조직(치아·뼈 등)용 접착제
20495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 해양 바이오디젤 및 혼합유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 아라미드(aramid)섬유, PBO 섬유 ○ 메디컬 섬유소재(조직재생용 섬유소재, 유착방지 및 차폐용 섬유소재, 정형외과용 섬유소재)